

4. 永久賃貸住宅標準賃貸保證金및 標準賃貸料

建設部告示 第1992-474號 1992. 8. 31

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법정영세민등이 아닌 자에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적용대상자

- 가.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서 입주한 자
- 나.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법정 영세민이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법정 영세민에서 제외된 후에도 계속 당해 임대주택에의 거주를 희망하는 자

2. 급지 및 임대료 조정

영구임대주택의 4급지를 신설하고 3급지와 4급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급	지	급	지	기	준	표준임대보증금	표준임대료
3급지	인구 30만이상	45,300원 / m ²	907원 / m ²				
	도시도청 소재지						
4급지	기타지역	43,000원 / m ²	862원 / m ²				

※1990년 9월 1일 건설부고시 제568호의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

3. 부과방법 및 금액

가. 부과방법 :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+차등부과 금액

나. 차등부과금액(전용면적 기준)

(1) 임대보증금

1990년 3월 5일 건설부고시 제97호로 고시한 장기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과 1990년 9월 1일 건설부고시 제568호로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과의 차액의 80%

(2) 임대료

1990년 3월 5일 건설부고시 제97호로 고시된 장기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와 1990년 9월 1일 건설부고시 제568호로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와의 차액의 50%

4. 부과시기

가.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 입주한 자 : 입주와 동시에 산정된 임대조건 적용

나. 법정영세민에서 제외된 자로서 계속 거주 희망자

- 최초 계약시 : 차등부과 금액의 30% 인상

- 1차 재계약시 : 차등부과 금액의 30% 인상

- 2차 재계약시 : 차등부과 금액의 40% 인상

5. 시행일시

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자연속의 신도시 꿈이있는 미래도시